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인천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7934 판결사기,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고단7934 사기,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영준(기소), 박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30. 23:2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phi, 55M)$ 가 운영하는 E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및 과일안주 1개와 담배 2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및 과일안주 1개와 담배 2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 14병을 바닥과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3명과 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보지 팔아서 돈 버냐, 보지를 찢어버린다, 전라도 년이 어디 여기 와서 장사를 해, 이 돌대가리야, 꺼져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맥주병을 벽과 바닥에 집어던져 그곳 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면유리 4장을 깨드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22:4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신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병원장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출입문의 강화유리를 발로 차 균열이 생기게 하여수리비 7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영상녹화요약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획인결과보고,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